농림부, 가축계열화 사업자 확인서 발급요령 제정

- 홍 보 부 -

◇…농림부는 지난 7월 1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5.404호, 97.6.26)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계열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가축계열화 사업자 확인서 발급 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다음은 가축계열화사업자 확인서 발급요령 전문이다.〈편집자주〉…◇

농림부훈령 제904호

가축계열화사업자확인서 발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7.7.1

농림부장관

가축계열화사업자 확인서 발급요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계열화사업자가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를 구입할 때에 부가세 영세율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가축계열화사업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서 발급대상자) 본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특례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하여 사육하는 법인(이 경우 위탁하기 위하여 직적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제3조(확인서발급) ① 제2조에 규정한 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배합사료와 특례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기 위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농가와 계열사업자간의 위탁사육 계약서 사본 1부.
3. 계열농가별 사육규모(전화번호 포함) 현황 1부.
4.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로 확인될 때에는 계열화 사업자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확인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가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확인서의 유효기간)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재발급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재발급 한 날부터 당초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발급실적제출) 시·도지사는 확인서 발급실적을 매반기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후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처리기간
7 일

가축( )계열화사업자 확인서 발급 신청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사업장소재지			
주사업내용			

상기 본인은 축산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이므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계열화 사업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농가와 계열사업자간의 위탁사육 계약서 사본 1부.
③ 계열농가별 사육규모(전화번 포함) 현황 1부.
④ 특례규정 제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74-09611 민 210㎜×297㎜
'97. 6. 30 승인 신문용지 54g/㎡